M - 104 - 2012

위험동력기계의 관리에 관한 기술지침

2012. 6.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
안전보건기술지침의 개요

ㅇ 작성자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김 건 남

ㅇ 개정자 : 안전연구실

○ 제·개정경과

- 1996년 4월 기계안전분야 기준제정위원회 심의
- 1996년 4월 총괄기준제정위원회 심의
- 2001년 10월 기계안전분야 기준제정위원회 심의
- 2001년 11월 총괄기준제정위원회 심의
- 2012년 4월 기계안전분야 기준제정위원회 심의(개정)
- ㅇ 관련규격 및 자료
 - 영국 ICI 그룹 엔지니어링 지침
- o 관련 법규·규칙·고시 등
-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편 제1장 제7절 제116조(압력방출 장치)
- 0 기술지침의 적용 및 문의

이 기술지침에 대한 의견 또는 문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 페이지 안전보건기술지침 소관 분야별 문의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공표일자 : 2012년 6 월 20 일

제 정 자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

KOSHA GUIDE M - 104 - 2012

위험동력기계의 관리에 관한 기술지침

1. 목 적

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(이하 "안전보건규칙"이라 한다) 제2편 제1장 제7절 제116조(압력방출장치)의 규정에 따라 유해·위험설비 중 동력기계의 안전 운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점검·유지에 관한 지침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2. 적용범위

이 지침은 공정안전 보고서와 관련하여 유해·위험물질을 규정수량 이상으로 제조·취급·사용·저장하는 유해·위험 설비가 있는 사업장에서 회전 또는 왕복 동 운동을 하는 동력기계에 대하여 적용한다.

3. 용어의 정의

- (1)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 - (가) "동력기계"라 함은 공정 내에서 사용되는 회전 또는 왕복동 운동을 하는 기계로 펌프, 팬, 압축기, 터빈, 원심기, 혼합기 등이고, 기계 운전이나 안전을 위한 부가적인 기계도 포함하며 운동으로 인한 위험이 있는 기계를 말한다.
 - (나) "위험동력기계"라 함은 고장의 발생 또는 오동작의 경우에 사람이나 환경에 중대한 위해를 가하거나 생명을 잃게 만드는 기계를 말한다.
- (2)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, 같은 법 시행령, 같은 법 시행 규칙, 안전보건규칙 및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4. 동력기계의 분류

동력기계는 그 기계나 방호장치에 고장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중대산업사고의

M - 104 - 2012

위험이 있는가 또는 없는가에 따라서 위험동력기계와 일반동력기계로 분류한다.

4.1 위험동력기계의 범위

- (1) 시행령 별표10에 의한 유해·위험물질을 취급하는 기계로서 고장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사람이나 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양의 물질이 누출될 수 있는 기계를 포함한다.
- (2) 기계의 고장이 공정 내에 위험한 상황을 일으켜 사람이나 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화재·폭발·제어불능의 반응들을 발생시킬 수 있는 기계를 포함한다.
- (3) 경험적으로 고장의 위험이 높으며 그 고장이 사람에게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기계를 포함한다.

4.2 분류방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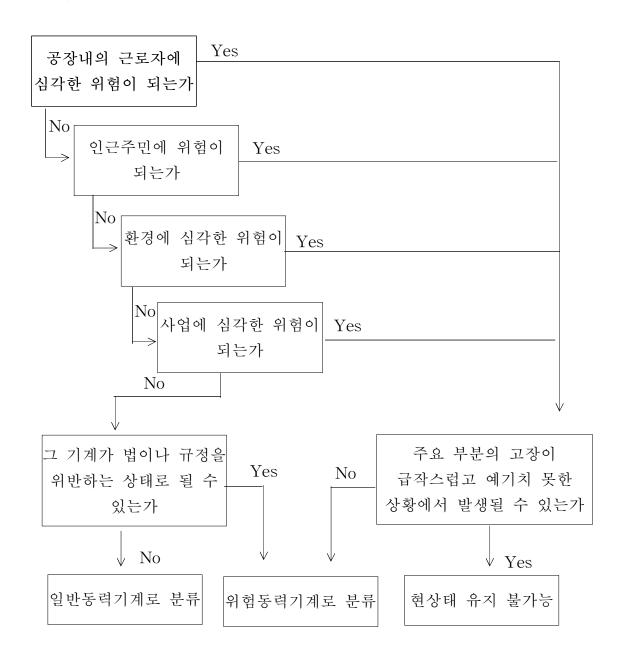
- (1) 새로운 기계나 재 사용하는 기계는 위험성 평가를 수행하여 위험도를 분류한다.
- (2) 기존 기계에 대한 평가는 평가팀을 구성하여 위험도를 분류하며 평가팀의 구성에는 다음의 전문가들이 포함되도록 한다.
 - (가) 공장과 설비를 잘 알고 있으며, 기계 책임자로 임명된 기계전문가
 - (나) 기계 설계전문가
 - (다) 공정과 공정흐름의 위험을 잘 알고 있는 공정전문가

4.3 동력기계의 위험도 분류절차

- (1) 실 등 부품의 손상으로 누출이나 새어나옴이 발생될 수 있는가를 검토한다.
- (2) 그 기계가 고장이 일어날 높은 확률을 가지고 있는가를 검토한다.

KOSHA GUIDE M - 104 - 2012

(3) <그림 1>에 따라 기계의 고장이 공정 내에 위험한 상태를 일으킬 수 있는가를 검토한다.



<그림 1> 위험도 분류절차

M - 104 - 2012

5. 설계확인

5.1 설계확인 절차

- (1) 위험동력기계는 지정된 설계전문가에 의하여 그 기계가 사양과 조건에 적합하게 설계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설계확인 절차를 거친다.
- (2) 설계확인의 결과는 문서로 기록하여 설계확인서를 작성한다.
- (3) 운전과 보수에 대한 기술을 축적하고 설계한계를 확인하는 설계확인 과정에 기계제작자를 활용하는 것이 권장된다.

5.2 설계 확인자료 및 확인사항

- (1) 설계확인에 필요한 서류 및 도면은 다음과 같다.
 - (가) 공정흐름도(PFD) 및 공정배관계장도(P&ID)
 - (나) 기계 및 구동장치의 상세 사양
 - (다) 기계외관도
 - (라) 기계단면도
 - (마) 부품·재질 목록
 - (바) 물질안전보건자료(MSDS)
 - (사) 위험성 평가 혹은 분석자료
- (2) 설계확인을 위하여 다음 사항들을 검토하고 확인한다.
 - (가) 기계의 용량 및 승인된 설계와 운전한계의 검토
 - (나) 경험상 발생 가능한 고장 요인에 대한 검토
 - (다) 위험물질 누출을 억제할 수 있는 대책 검토
 - (라) 방호장치와 그 적합성 검토
 - (마) 점검주기 및 계획 검토
- 5.3 방호장치 및 점검주기 계획 검토

M - 104 - 2012

- (1) 위험동력기계를 분석하여 발생 가능한 위험을 제어할 수 있는 방호장치 또는 제어기능 등을 기술하고 준비한다.
- (2) 필요한 곳에는 모니터링 설비나 경보설비 등을 설치한다.
- (3) 기계 및 부품들의 점검주기 및 방법이 포함된 점검계획을 마련하고 순찰주기 등을 정한다.

6. 가동전 점검

- (1) 기계의 가동 전에 점검이 이루어져야 하며 설계에 따라 설치가 완비되었는지 확인한다.
- (2) KOSHA CODE P-25-2000 가동전 점검지침에 따라 점검한다.

7. 정기점검

- (1) 5.3항에 기술되어 있는 점검계획대로 주요 부품들을 점검하고 방호장치를 시험한다.
- (2) 점검은 해당 기계를 잘 알고 있는 점검경험을 가진 전문가가 수행한다.
- (3) 점검의 방법과 범위는 다음 점검까지의 최대 기간과 앞으로의 가동을 위한 기계의 적합성 정도에 따라 정한다.
- (4) 점검 및 점검 후 보수사항은 보고서로 작성하여 책임자 결재 후 등록철에 보관한다.

8. 변경

위험동력기계의 주요기계부품, 방호장치, 운전한계 등을 변경할 경우에는

M - 104 - 2012

KOSHA CODE P-26-2000(변경요소관리 지침)에 따르되 변경검토 사항 중설계검토는 5항의 설계확인 절차를 수행한다.

9. 등록 및 기록

- (1) 위험동력기계는 개별 기계번호를 부여하고 장비대장에 분류 등록한다.
- (2) 기계별로 별도 자료철을 마련하여 주요 사양을 기재하고 자료를 철해 놓는다.
- (3) 각 기계에 개별기계번호를 부착한다.
- (4) 등록철에는 다음의 사항들을 포함시킨다.
 - (가) 개별기계번호
 - (나) 기계의 위치
 - (다) 관련 공정흐름도(PFD) 및 공정배관계장도(P&ID)
 - (라) 설계확인 증명서
 - (마) 위험성 평가 혹은 분석자료
 - (바) 주요부품 및 방호장치의 검사 및 점검계획
 - (사) 점검 보고서
 - (아) 유활계획
 - (자) 운전 및 정비지침서
 - (차) 정비 및 변경내역
 - (카) 기타 설계·제작·점검·검사·시험·방호장치·모니터링·정비·변경 에 관련된 서류

10. 감사

(1) 감사절차는 KOSHA CODE P-27-2000 자체감사계획 지침에 따라 감사한다.

KOSHA GUIDE M - 104 - 2012

- (2) 위험동력기계의 관리에 관한 기술지침이 기계수명기간동안 확실하게 수행되는지를 감사한다.
- (3) 감사에 필요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.
 - (가) 위험동력기계의 기계번호 목록
 - (나) 주요사양이 기재되어 있는 위험동력기계 목록
 - (다) 위험동력기계를 설계 확인한 설계기술자 목록
 - (라) 위험동력기계별 등록철

11. 위험동력기계의 고장

- (1) 위험동력기계의 고장은 중대산업사고로 발전될 수 있는 아차사고이므로 기계 관리자는 이 고장을 조사하여 보고서로 작성한다.
- (2) 위험동력기계의 고장조사 절차는 KOSHA CODE P-28-1995 공정사고조사 지침에 따른다.